

202.57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 명령 202.53호에 포함된 후속 명령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지속합니다. 이는 2020년 9월 19일 금요일까지 행정 명령 202.22호부터 202.26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호, 202.44호, 202.45호에 포함된 일시 정지, 수정, 지침을 다음을 제외하고 지속합니다.

- 버펄로시 헌장의 제28-66항.
-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거하여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부 법 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9월 19일까지 발행합니다.

- 공공 놀이시설의 모든 공공장소 폐쇄를 요구하는 확장된 행정명령 202.5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2020년 8월 17일 자로 불령장을 개장할 것을 허가하는 한에 있어서 수정되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발행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모든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수업이 운영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확장된 행정명령 202.3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수정되어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수업이 보건부 발행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허가하기 위한 한에 있어서 수정되며, 또한 이러한 운영이 2020년 8월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거나 현지 행정책임자가 보건부 발행 지침과 일치하여 연장할 수 있는 한에 한합니다.
- 202.28호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한 행정명령 202.48에 포함된 지침, 모든 상업적인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또는 모든 상업적 모기지의 해당 모기지 미납으로 담보권 행사를 진행 또는 집행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2020년 9월 20일까지 지속합니다.

- 뉴욕시 지역이 주 재개 4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정명령 202.53호에 포함된 지침은 2020년 8월 24일자로 저위험 실내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